

소규모합병 이사회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

수신 : 주식회사 케이프 대표이사 귀하

본인은 주식회사 케이프(존속회사)가 케이프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(소멸회사)를 흡수합병하는 합병계약에 관한 **이사회 결의(소규모합병)**에 대하여, **상법 제527조의3 제4항**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합병에 반대함을 통지합니다.

주주번호		주주명 (성명·법인명)	
소유주식의 종류		소유주식수	주
실질주주 여부	☐ 명부상 주주 ☐ 실질주주(증권계좌 보유) 증권회사 : _____ 계좌번호 : _____		

20 년 월 일

통지인 (주주)	
성 명 (법인명)	(서명 또는 인)
주민등록번호 (법인등록번호)	
주 소	
연 락 처	

주식회사 케이프 귀중

첨부 필수서류 (누락 시 반대의사표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)

[개인 주주]

- ☐ 반대의사표시 통지서 원본 1부 (본인 자필 서명 또는 인감 날인)
- ☐ 신분증 사본 1부 (주민등록증·운전면허증·여권 중 택1)
- ☐ (실질주주) 소유자증명서 또는 잔고증명서 1부 (증권회사 발급, 최근 발급본) — 명부상 주주는 불요
- ☐ (대리 제출) 위임장 1부 + 위임인 인감증명서 1부 +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

[법인 주주]

- ☐ 반대의사표시 통지서 원본 1부 (법인인감 날인)
- ☐ 법인인감증명서 1부
- ☐ (실질주주) 소유자증명서 또는 잔고증명서 1부 (증권회사 발급)
- ☐ (대리 제출) 위임장(법인인감 날인) 1부 +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

접수기간 · 접수방법 · 접수처

- 접수기간 : **2026. 07. 30. ~ 2026. 08. 13.** (접수기간 내에 회사에 도달한 서면에 한하여 효력이 있습니다.)
- 접수방법 : 서면(통지서 원본 및 첨부서류)을 우편 또는 방문으로 제출
- 접수처 : 경상남도 양산시 상북면 양산대로 1303 주식회사 케이프 K-SOX팀
※ 이메일·팩스·전화(구두) 접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. 반드시 서면 원본을 우편 또는 방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.

작성 안내 및 법적 효력

I. 근거 및 법적 효력

- 근거 : 상법 제527조의3 제4항·제5항 (소규모합병에 대한 존속회사 주주의 반대의사 표시).
- 본 합병에서 존속회사인 주식회사 케이프는 상법 제527조의3의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합니다.
- 존속회사(주식회사 케이프)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접수기간 (2026. 07. 30. ~ 2026. 08. 13.) 내에 서면으로 합병 반대의사를 통지하면,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 방식으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.

II. 작성·제출 유의사항

- 통지서는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하며, 개인은 자필 서명 또는 인감 날인, 법인은 법인인감을 날인합니다.
- 소유주식의 종류·수량은 주주명부 또는 증권회사 발급 증명서와 일치하여야 합니다.
- 증빙서류는 최근 발급본(통상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)을 제출하십시오.
- 상장주식(전자등록주식)을 증권계좌로 보유한 실질주주는, 거래 증권회사를 통해 소유자증명서(또는 잔고 증명서)를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- 서류 미비 또는 접수기간 경과 후 도달분은 반대의사표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